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94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장종태 · 김승원 · 김한규
김 윤 · 이주희 · 김문수
김남근 · 권향엽 · 박용갑
김재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내의 소형 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창고형 약국으로 인하여 주변 소형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됨. 실제로 대형 자본이 약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된 소형 약국의 폐업률이 매우 높아 약국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는 뜻의 “약국사막”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상황임.

이에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 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에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약국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약국의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을 등록(이하 “개설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그 밖의 등록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대형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이하 “대형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약국의 영업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계획 및 다른 약국과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등록시 또는 변경등록 이후 약국의 소재지가 제21조의5에

따른 약국사막지역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인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속한 경우 지체 없이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안에 소재한 약국을 개설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대형약국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그 외의 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약국(제21조의5에 따른 약국사막지역 안에 소재한 대형약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그 외의 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약국에 대하여 매월 하루 또는 이틀을 휴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인근 약국 개설자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5(약국사막지역 내 약국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구역 내에 약국이 없거나, 해당 구역의 면적이나 인구 수에 비하여 약국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사막지역 안에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약국사막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중 “약국개설등록”을 “개설등록”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약국 개설등록”을 “개설등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약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대형약국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생략)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약국의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을 등록(이하 “개설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그 밖의 등록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0조의3(대형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이하 “대형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약국의 영업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계획

및 다른 약국과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등록시 또는 변경등록 이후 약국의 소재지가 제21조의5에 따른 약국 사막지역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인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속한 경우 지체 없이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안에 소재한 약국을 개설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4(대형약국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

수·구청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그 외의 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약국(제21조의5에 따른 약국사막지역 안에 소재한 대형약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그 외의 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약국에 대하여 매월 하루 또는 이틀을 휴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인근 약국 개설자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신 설>

제80조(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5(약국사막지역 내 약국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구역 내에 약국이 없거나, 해당 구역의 면적이나 인구 수에 비하여 약국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사막지역 안에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약국사막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
-----개설등록-----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등록·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제20조에 따른 <u>약국 개설등록</u>을 하려는 자 3. ~ 7. (생략) ② (생략)	----- ----- -----. 제82조(수수료)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개설등록</u>-----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